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2.1.18.

개정(안) 2022.6.30.

제1조 (목적) (생략)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의 부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2조 제1항에 따른 탁구종목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동호인 선수’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24조에 따라 탁구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 ② ‘전문 선수’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11조에 따라 탁구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 선수를 말한다.
- ③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레벨)를 말한다.
- ④ ‘시·도 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한탁구협회에 가입된 ‘시·도 회원 단체’를 말한다.
- ⑤ ‘시·군·구 탁구협회’는 제5항의 ‘시·도 탁구협회’의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구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된 탁구종목의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생활체육 탁구 대회에 적용한다. 단, 제6조(입상 포인트의 산정)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대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탁구협회장 주최 또는 주관 생활체육 탁구대회
2. 시·도 탁구협회장기 및 해당 시·도의 시장기 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 시·군·구 탁구협회장기 및 해당 시·군·구의 시장기, 군수기, 또는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4. 대한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생활체육 탁구대회
5. 시·도 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생활체육 탁구대회(년간 3개 대회에 한정한다)

③ 대한탁구협회(시·도 및 시·군·구 탁구협회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지 아니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주최하는 자가 대한탁구협회장(시·도 탁구협회 포함)으로부터 탁구대회를 승인을 받은 경우, 대한탁구협회장(시·도 탁구협회 포함)은 해당 대회에 한하여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부수관리권한 등)

- ①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부수승급, 부수하향조정 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 ② 시·도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및 승급포인트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대한탁구협회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한탁구협회장 및 시·도 탁구협회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에서 입상한 타 시·도에 등록된 동호인의 입상포인트를 대한탁구협회를 통하여 통지 혹은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 (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① 남자 및 여자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및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 7단계로 구분한다. 단, 시·도 탁구협회(구·군 탁구협회 포함)는 초심부 등의 부수를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도 탁구협회(구·군 탁구협회 포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남녀 동호인 선수의 경기를 통합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남녀 통합부수 적용시 여자 동호인의 부수는 3단계를 하향(단, 여자 에이스부는 남자 1부로 간주)하여 통합 부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2.6.30.)

《예시》 여자 4부 → 남녀 통합 7부, 여자 6부 → 남녀 통합 9부

③ 제1항에 따른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부터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의 동호인 선수는 본 규정에 따라 부수의 승급 혹은 부수의 하향이 가능하다. (개정 2022.6.30.)

④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 방식은 동호인이 자발적인 승급신청후 시·도 탁구협회 부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제8조에 따른 승급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 자동승급되는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수의 하향의 방식은 제8조에 따라 동호인 선수의 부수 하향 신청 후 시·도 탁구협회 부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30.)

⑦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맹의 소속 탁구팀 선수로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다 음 -

구분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고등학교 재학중 이상	중학교 재학 중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재학 중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재학 중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에이스 부	2부	4부	6부

제6조 (입상 포인트의 산정)

①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text{개인전 입상포인트} = \text{입상 기본포인트} * \text{참가인원배율}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2.6.30.)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위)	3위 (공동 포함)	8강	비고
1부 ~ 4부	10점	7점	5점	없음	
5부 및 6부	10점	7점	5점	2점	

3. 제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부수별 개인전 참가자(참가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개인전 우승(4부) : 10점 * 82% (82명 참가) = 8.2점
- 개인전 우승(4부) : 10점 * 152% (152명 참가) = 15.2점
- 통합 개인전(1부 ~ 3부) 우승 : 10점 * 82% (82명 참가) = 8.2점
- 통합 개인전(1부 ~ 3부) 우승 : 10점 * 152% (152명 참가) = 15.2점

②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text{단체전 입상포인트} = \text{입상 기본포인트} * \text{참가 팀수배율}(\%)$

2. 단체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2.6.30.)

구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위)	3위 (공동 포함)	비고
단체전	10점	7점	5점	

3. 제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단체전 우승 : 10점 * 30% (30팀 참가) = 3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 단체전 우승 : 10점 * 50% (50팀 참가) = 5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③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22.6.30.)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3위 (공동 포함)	8강	비고
복식전	10점	7점	5점	2점	

3. 제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④ 동호인 선수가 동일한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신설 2022.6.30.)

제7조 (승급 포인트)

① 승급 포인트는 제7조 제1항의 입상 포인트(개인전)와 제7조 제2항의 입상 포인트(단체전)를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 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개정 2022.6.30.)

- 부수 별 승급 포인트 -

구분	에이스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비고
승급 포인트	없음	40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② 제1항의 승급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취득한 대회 종료일로부터 10년동안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의 승급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각 시·도 탁구협회가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개정 2022.6.30.)

④ 7부이하 부수의 승급기준은 각 시·도 탁구협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8조 (부수 하향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일 이전 2년이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종 대회를 3회이상 참가 및 출전한 만 50세 이상(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의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 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심의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로 하며, 시·도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핸디캡의 부여)

- ①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단,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공정하게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개정 2022.6.30.)
- ③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남자 에이스부와 경기시에는 통합 부수 차이 수(數)에서 1점을 가산한다)을 부여한다.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예시》

※ 남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1부 ~ 6부 ↔ 남자 1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한도 4점)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1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5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4점 : 5부수 차이/한도 4점)

※ 여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여자 에이스부 ~ 6부 ↔ 여자 에이스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핸디캡 3점 (= 통합 3개 부수 차이)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2부(통합 5부) : 핸디캡 4점 (= 통합 4개 부수 차이)

※ 남여 통합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1부(통합 4부) : 2+1 방식 (핸디캡 4점 : = 2 + 3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1+1 방식 (핸디캡 3점)

④ 복식전 경기에서는 해당 복식 조를 구성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합산한 수(數)〔에이스부는 숫자를 “0”으로 간주하며, 혼합복식(Mixed Doubles)의 경우 통합부수〕를 기준으로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의 복식조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 ① 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4명 ~ 9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탁구협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부수부여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한다.
- ⑤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승급 및 하향 대상자를 심의한다.

부칙 (2022.1.18.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 체계의 조정)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선수부와 1부 사이에 있는 ‘0부’ 등 이와 유사한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1부’로 간주한다.

제3조 (종전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의 처리)

제1조에 따른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각 시·도 탁구협회의 부수규정 등에 의하여 동호인 선수가 취득한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은 본 규정 시행일 현재 모두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동호인 선수의 입상포인트와 승급포인트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0’점에서 새로이 산정한다.

부칙 (2022.6.3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에서 신설 혹은 개정된 부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탁구협회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 시행지침’

I. 개요

- (1) 대한탁구협회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이하 ‘부수 규정’이라 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수 규정에 해석에 관한 사항을 본 지침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부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2.5.12.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1112번) ‘생활체육 동호인 부수 규정에 대하여’를 참고하시기 바람.
- (3) 2022.7.1.부터 모든 동호인은 1개의 부수만 가지게 됨.

시군구(지역) 부수 = 시도 부수 = 전국(오픈) 부수

II. ‘부수 규정’의 구체적 적용 지침

(1) 부수 등록 및 관리의 주체

●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 등록 및 관리를 누가 하는 지?

①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 등록 및 관리는 ‘부수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022.7.1.부터는 부수등록 및 관리의 관리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음.

② 따라서 부수 등록 및 관리를 대한탁구협회가 하는 것은 아님.

③ 만약, ‘시도 탁구협회장’이 소속 동호인의 부수 등록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탁구협회장’이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등록 및 관리를 이미 위임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시군구 협회의 부수가 시도협회의 부수로 간주 되는 것임”

(2) 부수관리 권한을 시군구 탁구협회에 위임하는 경우의 절차

● 현재 ‘시도 탁구협회장’이 부수 등록 및 관리하지 않고, 소속 ‘시군구 탁구

협회장'이 부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의 절차

- ① '부수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수 등의 관리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하는 경우,
- ② '시도 탁구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는 밟는 것이 타당함(가능하면, 2022.6.30.까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서면결의 포함)을 받으시고, 불가피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개최하시여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받으시기 바람).

(3) '2022.6.30. 현재 부수'의 정의

● '부수 규정' 부칙 제2조(부수체계의 조정)에서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① '부수 규정' 부칙 제2조(부수체계의 조정)에서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2022.6.30.이전에 '시도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한 경우를 의미함.
- ② 만약, 2022.6.30.이전에 '시도 탁구협회장'이 소속 동호인의 부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한 경우에는 '시군구 탁구협회'에 2022.6.30.현재 등록된 부수를 '부수 규정' 부칙 제2조의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함.
- ③ 이유 : 2022.6.30. 이전부터 '시도 탁구협회장'은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관리를 이미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4) '2개 부수이상을 일괄 하향'한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의 부수의 경우

● 2021.12.31.기준 등록부수에서 2022.6.30.사이에 2개 부수이상을 일괄 하향한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의 '2022.6.30.현재 부수'에 대한 해석

- ① '부수 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② 2022.6.30. 이전 각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부

수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③ 본 ‘부수 규정’은 동호인의 부수 일원화 및 전국 동호인 간의 경기력에 따른 부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④ 한편, 일부 ‘시군구 탁구협회’가 2022.7.1.부터 시행되는 본 ‘부수 규정’을 악용하여 ‘2개 이상의 부수를 일괄 하향’하였다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⑤ 이러한 ‘2개 부수이상의 일괄하향’은 본 ‘부수 규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를 과도하게 악용한 것이므로, 일부 시군구 탁구협회의 ‘2개 이상 일괄 하향된 부수’는 ‘부수 규정’ 부칙 제2조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 할 수 없음.

⑥ 따라서, ‘2개 부수이상의 일괄하향’한 시군구 탁구협회는 2022.6.30.이전 부수로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⑦ 만약, ‘2개 부수이상이 일괄하향’된 동호인이 출전하는 경우, 해당 동호인은 부정선수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본 ‘부수 규정’이 적용되는 대회 주최자는 출전불가 혹은 입상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대회 주최자는 이러한 사항을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5) ‘부수 규정’ 적용시점 관련

● 대회 참가접수는 2022.6.30.이전이고, 대회개최는 2022.7.1.이후 인 경우

① 적용지침 : 대회 참가접수 개시일이 2022.6.30.이전 이고, 대회 개최는 2022.7.1.이후인 경우에는 본 ‘부수 규정(참가부수 및 입상포인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이유 : ‘부수 규정’이 2022.7.1.부터 적용되므로 동호인의 2022.6.30.이전인 대회 접수시점의 부수와 2022.7.1.이후인 대회참가 시점의 부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므로 혼란 발생을 방지함.

(6) 입상자를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대회정보/ 대회결과/ 동호인대회) 공지

① 공지 방법 : ‘부수 규정’ 제3조 제2항의 승점포인트가 적용되는 모든 대회 주최자는 입상자 명단을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대회정보/ 대회결과/ 동호인

대회 결과'에 공지 (게시판 형태로 동호인 대회주최가 게시 가능토록 준비중)

② 공지 이유 : 입상자가 타 지역에 등록된 동호인인 경우, 입상포인트의 효율적 관리목적

※ 대한탁구협회에서는 동호인 부수 및 입상포인트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수관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양해바람.

③ 공지 요령 (예시)

● 대회명 : 대한탁구협회 동호인 탁구대회

● 대회 주최 : 대한 탁구협회

● 대회 기간 : 2022.7.16. ~ 7.17.

※ 입상자 게시 요령 : 아래의 형태로(성명, 부수, 순위, 소속 시도, 소속 시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당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 승점포인트 관리가 가능함) 대회 주최자가 대회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게시요망.

대회종목	순위	성명	부수	소속 시도	소속 시군구
개인단식 (4부)	1	홍길동(남)	4부	경기도	고양시
	2	김길서(남)	4부	경기도	안산시
	3	이길남(남)	4부	인천	중구
	3	박길복(남)	4부	서울	강남구
:	:	:	:	:	:
개인복식(상위부)	1	홍길동(남)	4부	경기도	평택시
	1	최탁구(남)	2부	충북	청주시
:	:	:	:	:	:
남자단체전(하위부)	1	김탁구(남)	5부	강원도	춘천시
	1	이탁구(남)	5부	강원도	춘천시
	1	홍탁구(남)	6부	강원도	춘천시

Ⅲ. 2022년 대한탁구협회 디비전 리그와 '부수 규정'의 적용 문제

(1) 디비전 리그 참가시 '부수 규정'에 따른 적용 여부

① 적용지침 : 디비전리그 참가접수 개시일이 2022.6.30.이전이므로 2022.7.1.

이후에 개최되는 디비전리그는 ‘부수 규정’의 동호인 부수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그러나, 2023년부터는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로 신청하여야 함).

② 이유 : ‘부수 규정’이 2022.7.1.부터 적용되므로 동호인의 2022.6.30.이전 디비전리그 참가접수 시점의 부수와 2022.7.1.이후의 디비전리그 참가 시점의 부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므로 혼란 발생 방지.

(2) 디비전 리그에 ‘부수 규정’의 입상 포인트는 적용 없음

① 적용지침 : 디비전 리그(T6 ~ T1)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부수 규정’의 입상 포인트가 적용되지 아니함.

② 이유 : 2022년 디비전 리그 요강에 따르면 T2 ~ T4리그의 경우 부수가 다르더라도 핸디없는 게임(경기)으로 진행되는 반면, ‘부수 규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 대회의 경우에는 핸디가 적용되어 양자 간에 서로 일치된 경기방식이 아니므로 디비전 리그의 입상자에 대하여 입상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VI. 등록비 납부와 부수관리

(1)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에 (년) 등록비 납부

①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6조(등록비징수)에서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동호인 선수도 경기인의 범위에 포함됨).

② 따라서, 각 시도 탁구협회장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호인 부수관리 등을 위한 비용충당 등의 목적으로 등록비를 동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③ ‘등록비를 납부하는 등록’과 ‘부수 등록’은 다른 개념임.

(2)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의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 범위

①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 :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에 해당함.

②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호인 :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판단은 해당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22.5.15.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위원회)